DEDICA
—DEDICATED LAWYERS—

법정 이야기 | 주식 양도

3년이 지나지 않은 창립주주의 주식을 매수할 때의 위험

(하노이시 인민법원 2019년 10월 22일 항소심 판결 제121/2019/KDTM-PT호 기준)

www.dedica-law.com · david@dedica-law.com · 039 969 0012

40억 동을 먼저 송금하고, 주식매매계약은 나중에 체결

H회사 개요

H회사는 주식회사로, 2004년 12월 30일 최초 사업등록을 받았으며 정관자본금은 65억 동, 창립주주는 19명이다.
H씨는 이사회 의장 겸 사장이며, 회사의 법정대표자이다.

거래

2007년 2월, H씨는 회사를 대표하여 N씨 측과 주식 100%를 133억 동에 매도하는 기본계약을 체결하였다.
2007년 3월 2일, N씨는 회사 계좌로 40억 동을 송금하였다.
3일 후인 2007년 3월 5일에야 창립주주 10명이 N씨와 합계 216,437.2주를 매도하는 계약 10건을 체결하였다.

그 후 무슨 일이 있었나?

2007년 3월 6일, 이사회 의장은 N씨를 회사의 정식 주주로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회사는 N씨를 주주로 등재하기 위한 사업등록 변경 절차를 완료하지 않았다.
2007년 12월 20일, 회사는 주식 100%를 다른 3명에게 400억 동에 매도하였다.

4건의 판결에 걸친 약 11년간의 소송

2007년	2008년 말	2010.12.16	2012.02.08	2018.01.02	2019.10.22
2007년 3월 5일, 창립주주 10명이 N씨와 주식매매계약 10건을 체결하였다. 2007년 12월 20일, 회사는 주식 100%를 다른 3명에게 매도하였다.	N씨가 H씨와 H회사를 상대로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	1심 법원은 계약 무효를 선고하고, H씨에게 원금과 손해배상금을 포함한 48.3억 동의 지급을 명하였다.	하노이 소재 최고인민법원 항소법원은 주식 가치가 상승한 상황에서 은행 이자율로 손해를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1심 판결을 파기하였다.	1심 법원은 재심리 후 H씨에게 154.9억 동의 지급을 명하였다.	항소법원은 이자 부분을 변경하여 H씨에게 153.8억 동의 지급을 명하였다.

모든 심급에서 주식매매계약은 무효로 판단되었다. 심리를 거치며 달라진 것은 N씨가 반환받을 금액의 산정 방식이었다.

매수인은 무엇을 청구했고, 항소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N씨의 청구

- H회사가 절차를 완료하여 N씨를 정관자본금의 29.083%에 해당하는 216,437.2주의 소유자로 인정할 것.
- 후속 매수인 3명에게 주식 100%를 매도한 계약을 취소할 것.
- 계약이 무효로 선고될 경우, 116.32억 동(400억 동 가격의 29%에 해당)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

항소법원의 판단

✗ N씨를 H회사의 주주로 인정하지 않는다.

✗ 후속 매수인 3명에 대한 주식매매계약은 별개의 거래이므로 취소하지 않는다.

✓ 2007년 3월 5일 체결된 주식양도계약은 무효임을 선고한다.

✓ H씨는 N씨에게 15,382,582,500동을 지급하라.

항소심 판결은 선고일인 2019년 10월 22일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하였다.

왜 10건의 주식매매계약이 무효인가?

거래 당시의 규정

2005년 기업법 제84조 제5항: "회사가 사업등록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창립주주는 자신의 보통주식을 다른 창립주주에게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으나, **창립주주가 아닌 자에게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자신의 보통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을 양도하려는 주주는 해당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하며, 양수인은 당연히 회사의 창립주주가 된다."

근거: 기업법 제60/2005/QH11호 제84조 제5항

법원의 판단

(i) 계약은 2007년 3월 5일에 체결되었으며, 이는 회사가 최초 사업등록을 받은 날(2004년 12월 30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이다.
(ii) 2006년 4월 25일자 회의록은 주주총회 회의록이라는 명칭을 갖고 있으나, 회의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음을 보여주는 자료나 결의가 없다. 따라서 이 회의록은 주주총회의 승인으로 볼 수 없다.
(iii) 회사는 N씨를 주식 소유자로 등재하기 위한 사업등록 변경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근거: 항소심 판결 제121/2019/KDTM-PT호 [2]항

결과: 법원은 목적과 내용이 법률의 금지규정을 위반한 거래는 무효라는 2005년 민법 제122조 제1항 b호 및 제128조를 적용하였다. 따라서 N씨는 회사의 주주가 되지 못하였다.

계약 무효에 대한 과실은 누구에게 있나?

과실이 있는 자

H씨는 이사회 의장이자 법정대표자로서 회사의 설립 시기와 3년간의 양도 제한 규정을 알아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H씨는 주주총회 결의 없이 외부인에게 자본 100%를 매도하는 방침을 통과시켰다.

누가 지급하나

H씨는 H회사와 기존 주주들을 대신하여 N씨와의 분쟁 전체를 해결할 책임을 자발적으로 부담하였다.
법원은 이것이 H씨가 후속 매수인 3명에게 주식을 양도할 때 한 약속과 부합하므로 이를 받아들였다.

배척된 주장

H씨는 N씨도 양도 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식을 매수하였으므로 과실이 있다며 항소하였다.
항소법원은 이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H씨가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자라는 판단을 유지하였다.

결과: H씨는 개인 자격으로 N씨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매수인은 얼마를 돌려받나?

153.8

억 동: H씨의 지급액

N씨가 받을 가치 82.04억 동과 연 9%의 지연이자 71.78억 동을 합한 금액이다.

법원의 산정 방식

원금: N씨는 40억 동을 송금하고 7,200만 동을 돌려받았으므로, 남은 원금은 39.28억 동이다.
받을 가치: 82.04억 동으로, H회사가 직접 발송한 2008년 1월 22일자 통지에 따라 산정하였다. 이 금액에는 주가 상승에 따른 차액이 포함되어 있다.
지연이자: 연 9%, 2008년 4월 12일부터 기산한다. 이날 N씨의 대리인이 돈을 받으러 왔으나 H씨가 위약금 26억 동의 공제를 요구하였다.

받아들여지지 않은 청구

N씨는 400억 동 가격의 29%를 청구하였다. 법원은 당시 회사의 총 주식 수가 650,000주가 아닌 897,000주였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H씨는 위약금 26억 동과 협력사에 지급한 180억 동의 공제를 요구하였다. 법원은 이 요구가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판결은 어떤 점에서 타당한가?

주식 가치에 따른 손해 산정

주가가 상승한 경우 원금과 은행 이자만 반환해서는 매수 대금을 지급한 자의 손해를 충분히 보전할 수 없다. 2012년 항소법원이 이 점을 지적하였고, 이후 모든 심리에서 상승한 주식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회의록은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주주총회 회의록이라는 명칭의 문서 하나만으로는 부족하다. 회의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음을 보여주는 자료와 결의가 있어야 한다.

이사회의 확인만으로는 부족하다

계약은 이사회의 확인을 받았고 이사회 의장은 N씨를 주주로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럼에도 법률이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구하므로 법원은 계약 무효를 선고하였다.

두 거래의 구분

후속 매수인 3명에게 주식 100%를 매도한 계약은 N씨와 무관한 별개의 거래이므로 함께 취소되지 않았다. N씨의 권리는 금전 지급 명령으로 해결되었다.

논리에서 남은 쟁점은 무엇인가?

전면 금지인가, 승인만 필요한가?

법률은 창립주주가 처음 3년 동안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으면 창립주주가 아닌 자에게 주식을 매도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런데 판결의 결론 부분은 계약이 “양도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무효라고 하였다. 이 문장만 읽으면 3년 동안 양도가 전면 금지된다고 오해하기 쉽다.

매수인이 스스로 확인해야 하나?

매도 주주들은 N씨가 주식이 양도 기간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을 알면서도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법원은 H씨를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자로 판단하였으나, 판결은 N씨가 양도 요건을 알았는지 여부를 따로 분석하지 않았다.

주식이 양도 제한 중임을 알면서도 매수한 매수인도 과실의 일부를 부담해야 할까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 주세요.

현행 기업법은 무엇이 다른가?

	2005년 법 (제84조 제5항)	현행법 (제120조 제3항, 제4항)
3년 이내 외부인에게 매도	창립주주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외부인에게 매도할 수 있다.	**여전히 주주총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3년의 기간 내에~~**03년 이내에**(회사가 ~~사업등록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창립주주는 자신의 보통주식을 다른 창립주주에게 자유롭게 양도할 권리가 있으나~~**기업등록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창립주주의 보통주식은 다른 창립주주에게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으며** 창립주주가 아닌 자에게는 ~~자신의 보통주식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양도할 수 있다.
양수인의 지위	양수인은 당연히 회사의 창립주주가 된다.	**"당연히 창립주주가 된다"는 규정을 삭제하였다.** ~~이 경우에~~**이 경우**, **창립**주주가 **보통**주식을 양도하려는 때에는 해당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하~~며, 양수인은 당연히 회사의 창립주주가 된다.~~**다**.
제한되지 않는 주식	제84조는 제한에서 제외되는 주식을 규정하지 않았다.	**양도 제한을 받지 않는 두 가지 주식을 추가하였다.** **4. 이 조 제3항의 제한은 다음 보통주식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a) 창립주주가 기업 설립등록 후 추가로 취득한 주식; b) 창립주주가 아닌 다른 자에게 이미 양도된 주식.**

근거: 기업법 제60/2005/QH11호 제84조 제5항; 기업법 제59/2020/QH14호 제120조 제3항, 제4항(2025년 8월 15일자 통합문서 제67/VBHN-VPQH호). 거래가 무효인 경우 "손해를 발생시킨 과실 있는 당사자가 배상해야 한다"는 원칙은 2015년 민법 제131조 제4항에 그대로 유지되어 있다.

이 사건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1. 처음 3년 동안 창립주주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창립주주가 아닌 자에게 보통주식을 매도할 수 있다. 유효한 승인이 없으면 당사자들이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했더라도 계약이 무효로 선고될 수 있다.

2. 이사회의 확인이나 이사회 의장의 결정은 주주총회의 승인을 대신할 수 없다.

3. 규정에 위반되는 거래를 주도한 법정대표자는 과실이 있는 자로 판단되어 매수인에게 금전을 지급해야 할 수 있다.

4. 주가가 상승한 경우 손해는 원금과 은행 이자뿐 아니라 상승한 주식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될 수 있다.

이 거래에서 당신은 어느 위치에 있나요?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

- 기업등록증명서 발급일과 창립주주 명단을 확인하여 주식이 아직 양도 제한 중인지 파악한다.
- 매도인에게 양도를 승인하는 주주총회 결의와 회의록, 소집 서류를 요구한다.
- 서류를 모두 받은 후에만 대금을 지급하거나, 에스크로 계좌를 통한 지급을 약정한다.

주식을 매도하는 창립주주

- 매도하려는 주식이 3년의 양도 제한 기간 내에 있는지 확인한다.
- 기업 설립등록 후 추가로 취득한 주식은 제한되지 않으므로, 협상 시 이 부분을 따로 구분한다.
- 주주총회의 승인 전에는 매수인으로부터 대금을 받지 않는다.

법정대표자

- 주주총회 결의 없이 주주를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대금을 수령하지 않는다.
- 주주총회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개최하고 소집·표결 서류를 모두 보관한다.
- 거래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즉시 신규 주주 등재 절차를 완료한다.

DEDICA
—DEDICATED LAWYERS—

문의하기

DEDICA의 변호사 및 법률 전문가 팀이 언제나 도와드립니다. 지금 바로 연락하시어 상담과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받아 보세요.

기업·투자
형사

상시 법률자문
인수합병(M&A)

분쟁 해결
상표·저작권

주소

호찌민시 Xuân Hòa 동 Hai Bà Trưng 171, A&T 빌딩 11층

전화

+84 39 969 0012

이메일

david@dedica-law.com

웹사이트

www.dedica-law.com

지금 바로 전화하시거나 메시지를 남겨 상담을 받아 보세요.